제5차 치매관리종합계획('26~'30) 주요내용

< 노인건강과, '26.2.12(목)>

□ 수립 배경

○ **(연혁)** 국가 차원의 **종합적·체계적 치매 관리**를 위한 제1차 "치매관리 종합대책('08.9)" 수립 이후, **「치매관리법」 제정**('11.8)·**시행**('12.2)

- **동법 제6조**(치매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등)에 따라 **치매관리종합계획을 수립**하도록 **의무화해 5년마다 수립·발표**

○ **(현황)** 4차례의 종합계획, 치매국가책임제('17.9)에 따라 치매 관련 정책은 치매 관련 **인프라 확충** 및 **보호자 경제적 부담 경감**에 **초점**을 두어 **진행**

< 각 종합계획별 주요 성과 >

구분	주요성과	구분	주요성과
1차 ('08-'12)	• (예방) 지자체 치매 조기검진 의무화 • (치료) **치매치료 바우처(약제비)** 지원 • (환경) 치매극복의 날, 걷기대회 개최 • (인프라) **국가치매등록관리DB** 구축	**3차 ('16-'20)**	• (치료) **치매정밀검진검사도구 급여**화 • (치료) **치매전문병동 모델** 개발 및 시범운영 • (돌봄) 단기방문요양서비스 도입 • (환경) **치매공공후견제 도입**
2차 ('13-'15)	• (돌봄) **장기요양 5등급** 신설 • (돌봄) **치매가족휴가제** 도입 • (인프라) **치매상담콜센터** 운영 • (인프라) 중앙-광역치매센터 등 **전달체계** 확립	**4차 ('21-'25)**	• (예방) **한국형 치매선별검사도구** 개발 • (치료) **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** 도입 • (돌봄) **선임요양보호사 대상 치매교육과정** 신설 • (인프라) 치매안심센터 운영평가 시행

※ **치매국가책임제('17.9)** : **치매안심센터 설치**(256개소), **중증치매 의료비 본인부담률 10%**로 **하향**, 장기요양 **인지지원등급 신설**, 치매극복연구개발(R&D) 추진

○ **(추진경과)** **제5차 치매관리종합계획 수립 연구**('25.4~10, 중앙치매센터), **수요자 간담회**(3.25, 7.9, 7.10), 관계 부서·기관 **의견조회**('25.10), 연구 **공청회**(12.8), **전문가 간담회**(12.17, 제1차관)

◇ 초고령사회 진입 등 **정책환경 변화**와 **수요 다변화**에 따라, **향후 5년을 준비**하는 치매 관리 정책의 **새로운 비전 제시 필요**

⇒ **"치매가 있어도 일상을 누릴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"**를 **비전**으로 **5대 전략, 10대 주요과제, 73개 세부과제** 수립

⇒ **환자 중심**으로 **국가가 동행**하는 **치매안심 기본사회 실현** 목표

비전

치매가 있어도 일상을 누릴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

목표

- **치매 예방부터 돌봄까지 全단계에서**
- **환자가 살던 곳에서 안심하고 지낼 수 있게 국가가 동행하겠습니다.**
- **지역 현장에 맞는 기반이 형성되도록**

대표 지표

- **(총괄) 지역사회 치매관리율 (25) 76.4% → (30) 84.4%**

* 치매안심센터 치매환자 등록률, 경도인지장애진단자 등록률 치매환자 및 보호자 이용률 등 가중치 합

- **(권리보장) 치매안심재산관리지원서비스 (26) 시범 → (28) 본사업 도입**
- **(인프라) 치매관리주치의 (26) 90개 시군구 → (28) 전국 확대**

주요 과제

1 "일상에서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" 조기예방·치료체계 강화

1. 경도인지장애 조기진단 강화 및 치매위험인자 관리
2. 전문치료체계 구축과 치매복합질환 대응

2 "가족이 지치지 않도록" 돌봄과 맞춤 지원 내실화

1. 치매 걱정 없는 인프라 확충과 서비스 다양화
2. 보호자의 돌봄소진 예방 및 종사자 BPSD 등 치매역량 강화

3 "지역사회가 함께하는" 치매 친화적 환경과 권리 보장

1. 치매여도 안전한 치매친화적 환경 조성
2. 자기결정권 및 자산관리 등 치매환자 권리 보장

4 "미래를 대비하는" 연구 지원 확대

1. AI 등 치매 연구 및 디지털 기술 활용 지원
2. 데이터 기반 치매정책 평가

5 "모두가 협력하는" 정책 기반 고도화

1.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치매관리체계 고도화
2. 촘촘한 치매자원 연결망 형성

□ 핵심 과제

1. 일상에서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조기예방·치료체계 강화
❶ 치매안심센터용 자체진단검사도구(CIST-ID) 개발('26~'27)
❷ 재택의료센터와 연계 등을 통한 치매관리주치의 전국 확대(現 42개 시·군·구) * 재택의료센터 대상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 치매관리주치의 신청 안내

2. 가족이 지치지 않도록 돌봄과 맞춤 지원 내실화
❸ 보호자 간 돌봄노하우 활용하는 "기억친구 멘토-멘티" 노인일자리 제공
❹ 장기요양 치매 수급자의 주야간보호시설 월 이용한도 상향 + 환자쉼터와 중복 허용

3.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치매친화적 환경과 권리 보장
❺ 치매안심재산관리지원서비스 도입 및 공공후견 활성화* * (26) 300명 지원 → (30)1,900명
❻ 치매환자 등 운전 고위험군 대상 운전능력자가진단시스템 도입

4. 미래를 대비하는 연구 지원 확대
❼ AI, 빅데이터 등 기술 변화 대응 혁신기술 기반 연구 지원
❽ 치매 특화 물품 복지용구 예비급여 확대

5. 모두가 협력하는 정책 기반 고도화
❾ 통합돌봄지원법 시행('26.3 예정)에 따라 치매유관자원 연계 강화
❿ 농어촌 등 지역 특색에 적합한 현장중심형 치매안심센터로 전환

□ 주요 과제

1 "일상에서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" 조기예방·치료체계 강화

◇ **한국형 자체진단도구 개발, 경도인지장애 관리체계 강화 등**을 통해 **조기진단체계 효율화** 및 **선제적 예방관리 제고**

◇ **치매관리주치의 확대, 재택의료센터의 치매교육 확충**, 치매 주요 원인별 맞춤 진료지침 개발 등으로 **치매치료체계 확립**

○ **(조기발견)** 치매 유병률이 급격히 증가하는 **후기 고령기**(85세 이상) **진입 前 치매 조기발견**을 위한 **치매검진체계*** **개편**

* (검사체계) 선별(CIST) → 진단검사 → 감별검사(CT 등 협력병원 의뢰) 단계로 시행

- **(자체진단)** 현행 **진단도구의 장시간 검사 소요** 등으로 인한 **경도인지장애 조기발견 제약**을 **해소**하기 위해 **자체 진단검사 도구(CIST-In Depth)를 개발 등 치매검사도구 개선**('26~'27 개발, '28 확산)

- **(검사지원)** 감별검사 **본인부담금 지원액 상향을 추진**하여 치매 검사 비용 **부담 완화 검토**

* (검사비용) 원인을 확인하는 감별검사의 경우 본인부담금 5만원(CT)~33만원 소요

- **(연계체계)** 노인맞춤돌봄*, 노인일자리**, 의료·요양 통합돌봄*** 등과 **치매안심센터**와의 **연계체계**를 **구축**하여 **치매환자 조기발견체계 강화**('26)

* (맞춤돌봄) 생활지원사가 '주관적기억감퇴 설문(SMCQ)' 등을 활용, 이용자 인지기능을 모니터링하고 치매가 의심되는 경우 전문기관인 치매안심센터로 연계

** (노인일자리) 노인공익활동사업자 참여자 대상 선별검진(CIST) 수검 완료자에 대해 활동시간(3시간) 인정하여 치매진단 유도

*** (통합돌봄) 노인 통합판정서에 '인지기능저하', '정신행동증상', '문제행동증상', '의사소통기능저하' 등으로 치매가 의심되는 경우 치매안심센터로 선별검사 연계

	현행	개선
진단검사	▸치매안심센터 내 CERAD-K, SNSB 시행 * 저작권료 연간 2억원 소요 ** 1인당 1~2시간 소요되어 장시간 대기	▸의료기관용 진단검사도구(CERAD-K 등)를 **치매안심센터에 적합**하도록 **자체진단도구 개발** * (기대효과) 시간 절약, 비용 절감
연계체계	▸노인유관사업 간 연계 부족	▸노인맞춤돌봄, 노인일자리, 통합돌봄 등 **연계체계 강화**로 **조기발견체계 개선**

○ **(예방관리) 치매로의 진행 위험**이 높은 **경도인지장애부터 인지건강을 적극 관리**할 수 있도록 안심센터의 추적관리 등 **예방기능 강화**[주요]

- **(관리체계)** 경도인지장애진단자를 위한 치매 위험인자 **자가관리매뉴얼***, **연계서비스**, 모니터링 등 **관리 기반 마련**('27)[신규]

  * 란셋위원회(`24)의 청력손실, 고콜레스테롤증, **우울**, 고혈압, 흡연, 음주, **신체활동 부족, 비만, 사회적 고립** 등 14개 치매위험인자별 상태 확인 및 맞춤 관리방안 안내

- **(서비스확충) 경도인지장애 진단자가 이용**할 수 있는 치매안심센터 **인지강화교실을 대폭 확충**하고(주1회→주3회) **서비스 다양화** 방안 모색

- **(프로그램연계)** 치매 예방을 위해 **문화로 치유사업***(문체부), **건강100세 운동교실**** 등 경도인지장애진단자가 **이용**할 수 있는 **프로그램 지원**

  * (문화로 치유) 치매안심센터를 이용하는 경도인지장애진단자와 치매위험자(65세 이상) 대상으로 민간단체와의 연계를 통해 미술, 음악 등 예술치유활동 지원(문화체육관광부)

  ** (건강100세운동교실) 낙상예방운동 등 신체활동 증진을 위해 경로당, 복지관 등 지역사회 기관에서 주 2~3회 운동 강습 프로그램 제공

○ **(치매치료) 치매관리주치의** 등 지역 내 **치매인프라·접근성 강화**, **재택의료센터 연계**, 맞춤 치료가이드라인 개발 등 **치매치료체계 확립**

- **(인프라확충)** 성과평가를 통한 **치매관리주치의*** **단계적 확충** 및 **치매안심병원**('25, 25개소) **지정 확대 추진**

  * (치매관리주치의) `25년 42개 시군구 → `26년 90개 → `28년 전국 확대

  ※ **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**의 **추진과정을 모니터링**하여 치매관리주치의와 정합성 있는 **관계 재설정 모색**
  예) 치매환자를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의 '집중관리군' 포함 방안 및 집중관리군內 치매환자 치료 시 필요한 치매 교육 포함 등 검토

- **(치료연계) 재택의료센터** 교육프로그램 내 **치매교육***을 **포함**하고, 복지서비스 등 필요시 **치매안심센터 연계**('26)[주요]

  * **심화 치매교육 희망** 시 중앙치매센터 주관 **치매전문교육** 수강 안내**(교육 이수 시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신청 가능)**

- **(진료지침)** 치매원인, 중증도 등 치매환자 **개별 특성을 고려**하여 **서비스가 제공**될 수 있도록 **근거 기반 임상진료지침 개발**('27~'28)

2 "가족이 지치지 않도록" 돌봄과 맞춤 지원 내실화

◇ **치매환자 정서 지원** 및 **보호자**의 **노인일자리 제공**을 통해 보호자 **돌봄 소진 예방 방안** 마련

◇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자 **월 이용한도 상향** 및 **치매환자쉼터 중복 이용 허용**, **BPSD교육과정 확충** 등 치매 돌봄서비스 **내실화**

○ **(돌봄인프라) 치매전담형 요양시설** 확충, 주야간보호기관의 **단기보호 제도화** 등으로 **돌봄인프라 확대**

- **(치매전담실)** 국공립기관·병원이 부족한 지역 중심 **치매전담형 요양시설 및 주야간보호기관 신축 지원*** 및 인지스티커 등 **시설 내 치매 친화 환경**** **조성**('27~)

* 미확충 지역(53개 시군구) 중심 신축 지원 및 시설內 치매환자가 이동하기 좋은 치매친화 환경 설계

** 중앙치매센터 등과 **협력**하여 표식, 조명 등 시**설 내부 치매친화 가이드라인 개발·배포**

- **(여건개선)** 주야간보호기관 **단기보호 제도화***를 통한 **장기요양가족휴가제 이용 활성화** 및 상황별 대응매뉴얼 등을 통해 **치매상담콜센터 품질 개선**

* 시설 및 인력 기준을 갖춘 주야간보호 기관에서 단기보호가 가능하도록 인센티브 제공 등

○ **(돌봄경감) 치매환자 가족이 돌봄 부담**으로 겪는 **우울감 등을 완화**할 수 있도록 **심적 스트레스 완화 지원** 및 **장기요양서비스 이용 확대**

* '23년 치매역학실태조사 치매환자 가족 대상 조사: (가장 부정적으로 변화된 영역) **정신건강 50%,** (돌봄 과정에서 어려움) **경제적 부담 38.3%**, **치매 지식 부족 25.5%**

- **(정서지원)** 치매안심센터의 **정서지원 패키지 운영**, **그룹상담서비스 운영** 등 치매환자 보호자 대상 **가족교실, 자조모임을 다양화**('26~)*

* (現) 가족교실, 자조모임은 정보제공 위주로 운영되어 서비스 다양성 부족
→ (改) 상담, 정서지원, 멘토링 등 여러 모임 형태로 운영 다각화

- **(일자리) 돌봄 경험이 풍부한 보호자**가 **초기돌봄 보호자**에게 돌봄 경험을 공유하는 **'기억친구 멘토-멘티'(가칭) 노인일자리 제공**('26 개발, '27 제공) 주요·국정과제

* **수요자 간담회** 결과('25.7), **돌봄 장기화**로 돌봄**역량은 높으나 직장 유지가 곤란**해 보호자의 축적된 **돌봄 경험을 활용한 지원책** 마련 필요

	현행		개선
보호자	▸돌봄 부담으로 인한 우울감 호소 ▸보호자의 경제적 부담, 치매 정보 부족 ※ '23년 치매역학실태조사 지역사회 보호자 대상	⇨	▸치매안심센터의 **정서지원 패키지** 운영 ▸경제적 지원과 함께 교류환경도 제공하는 **치매환자 가족**의 **노인일자리 제공**

- **(돌봄지원)** 치매를 지닌 장기요양수급자의 **월 이용한도 상향을 검토**('27)하고, 치매환자**쉼터(안심센터)-주·야간보호시설(장기요양)** 간 **중복 이용**을 **허용**('26 고시 개정)하여 **돌봄 지원 강화**주요

* 치매환자쉼터는 주 2회(반일), 인지지원등급자의 주야간보호시설 이용한도는 12일(전일) 운영되어 중복 제한 시, 치매환자 보호자의 돌봄 부담 가중

○ **(종사자역량)** 치매환자 주된 **돌봄 지원자**인 **요양보호사** 대상 **교육 확충**, 돌봄을 어렵게 하는 **행동심리증상**(BPSD)* **교육과정 확대** 등 역량 강화

* 행동심리증상(BPSD, Behavioral Psychological Symptoms of Dementia): **배회, 망상, 폭력성** 등 치매에 수반되는 **행동적·심리적 증상**

- **(요양보호사) 선임요양보호사* 확대** 및 치매교육 확충** 등 **치매돌봄 역량 개선**

* 입소자50명이상노인요양시설에서 60개월이상근무 및 40시간승급교육 이수 시 지정(월 15만원 지급)

** (선임요양보호사 교육이수) '25년3,600명 → '26년5,200명 → '30년6,700명

- **(BPSD대응)** 간호사, 작업치료사 등 **직종별 전문교육 내 BPSD 교육과정**신규 **확충**('26)을 통해 **BPSD** 대응역량 **강화**

* (추진계획) 간호사, 작업치료사 교육과정 내 BPSD교육 확충, '30년2,500명 이수 목표

3 "지역사회가 함께하는" 치매친화적 환경과 권리 보장

◇ 치매환자가 **침해당하기 쉬운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치매안심재산관리지원서비스, 공공후견 활성화** 등 **제도적 기반 강화**

◇ 운전능력진단 도구 개발 등 치매환자가 **지역사회**에서 **안심하고 생활**할 수 있는 **환경 조성**

○ **(권익보장)** 치매안심재산관리지원서비스, 치매공공후견제도 등 치매환자의 **권익을 보장**하는 **제도적 기틀 마련**

- **(재산권) 의사능력 저하**로 인한 사기 등 **경제적 피해를 예방**하기 위해 **치매안심재산관리지원서비스 도입**주요국정과제

* 시범사업('26~'27)을 토대로 지원대상, 지원범위, 지원절차 등 재산관리지원서비스 도입 근거를 규정한 치매관리법령 개정('27) 추진, 본사업('28~)

< 치매안심재산관리지원서비스 시범사업 개요>

► 사업 내용 : **본인 또는 후견인**의 **의사**에 따라 **신탁계약을 체결**하고, **국민연금공단**이 이에 근거한 의료비, 필요물품 등 **일상생활에 필요**한 물품·서비스 **사용에 지출**될 수 있도록 **지원**
* 치매진단 이후에는 후견인을 선임하고, 후견인이 공공기관과 신탁계약 체결

► 대상자 : **치매환자, 경도인지장애진단자** 등 재산관리 위험이 있거나 위험이 예상되는 자로 기초연금수급권자(경제적 학대 또는 학대 위험이 있는 자 우선 지원, `26년 750명 목표)

► 지원범위 : 시범사업에서는 현금, 지명채권(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등), 주택연금 등으로 **한정**하고, **단계적 확대**
- **신탁수수료**는 **무료가 원칙**이나 **고액자산가**의 경우 **실비 수준의 수수료 부과** 검토
* 민간신탁시장(통상 10억) 고려, 신탁재산 상한액을 10억으로 제한

► 사업 절차 : 연금공단·노인유관기관 홍보·대상자 발굴 → 연금공단 상담·접수 → 연금공단 재정지원 계획 수립·검토 → 치매안심센터·통합돌봄 전담부서 서비스 연계 → 연금공단 점검·감독
- 대상자가 **적절한 복지서비스**를 받을 수 있도록 **신탁이 개시**된 경우 치매안심센터, 통합돌봄 전담부서에 **서비스 연계**

홍보·대상자 발굴	→	상담·접수	→	재정지원계획 수립·검토	→	신탁재산 관리·지출	→	서비스 연계	→	점검·감독
국민연금공단 노인유관기관		연금공단		연금공단		연금공단		치매안심센터 통합돌봄팀		연금공단

► 추진방안 : 국민연금공단을 중심으로 **치매안심재산관리지원서비스 시범사업 시행**(`26.4~)
* 연금공단 본부 및 7개 지역본부 중심으로 시범사업 운영, 시범사업 적극 대응을 위해 본부 내 재산관리지원단(사업기획부, 재산관리부, 치매안심서비스부) 신설

► 추진계획 : 시범사업 중간평가 및 법 개정 추진(`26.下~`27), 본사업 도입(`28)

- **(자기결정권)** 치매공공후견인 **지원인원 확대***, 광역센터의 **후견 관리 역할 강화**** 등 치매**공공후견인 지원제도 활성화** 국정과제

* (공공후견 지원인원) `25년 256명 → `26년 300명 → `30년 1.900명

** 후견인 후보자 교육·추천, 선임 시 후견인 감독 및 사후관리 등을 수행하기 위해 광역센터 내 전담부서 신설 추진

○ **(안심환경)** **운전능력 진단도구** 등 치매환자 대상 **운전면허 관리 체계 개편 추진** 경찰청

- **(운전진단)** **고령운전자**(75세 이상) **운전면허 정기 적성검사**(매3년)시 **치매선별검사**(CIST) 등을 통해 **운전면허 수시 적성검사*** 실시 중이나 이후 절차에 **실질적 운전능력**을 **판단**할 수 있는 **도구 미비****

* 안전운전에 장애가 되는 후천적 신체장애 등이 발생한 경우 운전면허 유지 여부 검사

** 치매선별검사(CIST)는 기억력과 사고력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로 운전능력과 관계있는 순발력, 상황판단능력 등을 측정하기 어려움

⇨ **고위험군** 대상 개발된 **운전능력진단시스템**(실차/VR)을 **시범적용***('26)하고 향후 **조건부 운전면허제도에 활용**('27)하여 현행 **적성검사 절차제도 보완**

* '75세 이상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'에서 시범운영이 가능하도록 시행규칙 개정 완료('25. 12)

※ 치매 운전자의 운전면허 관리를 위한 운전능력진단시스템의 세부적인 활용 방안은 추후 결정 예정

【 현행 75세 이상 운전면허 정기 적성검사 치매 관리 제도 】

치매선별검사	→	치매여부 진단	→	수시적성검사	→	심의 후
치매안심센터	인지 저하	의료기관	제출	운전적성 판정위원회		운전면허 유지/취소

1) 정상으로 판정될 경우 운전안전교육 등 정기적성검사 이행
2) 운전 가능여부에 대한 소견서 등과 함께 운전적성판정위원회에서 판단·결정

○ **(인식개선) 인지건강 실천지수 개편, 치매용어 정비** 등 치매 **긍정적 인식확산** 노력

- **(실천지수) 14개 치매위험인자**에 맞게 **인지건강 실천지수를 개편***하고 치매안심센터 등 **다양한 기관에 배포**하여 **인지건강 문화 조성**('26~)

* (現) 치매예방수칙3·3·3: 3권(걷고, 골고루먹기, 독서)·3금(음주, 흡연, 뇌손상)·3행(정기검진, 사회적교류, 조기검진) → (改) 계량화된 위험수준·예방방안 제시, 최근 연구결과 반영

- **(용어정비)** 어르신의 치매안심센터 등 **치매기관의 방문율 제고**를 위해 **국민 수용도** 기반* 단계적 치매 **용어 정비** 추진

* 치매용어뿐만 아니라 치매안심센터, 치매환자쉼터 등 기관·사업명에 대해서 국민 수용도·방문율 제고를 위한 대국민 설문조사 실시(`26) 및 결과에 따른 변경 추진

4 "미래를 대비하는" 연구 지원 확대

◇ AI 등 **기술환경 변화**에 따른 **혁신기술 기반 치매 연구 지원**
◇ 치매 진단 신기술 검증, 복지용구 예비급여 시범사업 확대 등 **첨단기술이 현장에 적용**될 수 있도록 **기반 조성**

○ **(AI기술지원)** AI·빅데이터 기반의 **정밀 의료**를 **활용**한 **치매 원인 규명, 조기진단** 및 **맞춤형 치료·예방 기술개발** 지원 및 확산

- 멀티모달 파운데이션 등 **혁신 기술 연구를 지원**하고 **혁신의료기술**인 경우 **건강보험 임시등재 시범사업** 등을 통해 **일정 기간 사용 허용**

○ **(기술활용)** 돌봄 현장에 치매 관련 **첨단기술**을 **활용**한 **제품**들이 **적용**될 수 있도록 장기요양 **예비급여 및 급여 품목 확대**('27~)

* 실종예방기기(배회감지기 등), ICT프로그램 등 치매맞춤 품목 확대 검토

○ **(프로그램관리)** 증가하는 치매특화 인지중재프로그램 개발에 따라 **근거** 기반 **치매프로그램 확산**을 위해 **치매프로그램 질 관리체계 구축**('26~)

* 치매안심센터內 관리체계가 부재한 프로그램 운영에 따라 프로그램의 신뢰성 문제 제기

5 "모두가 협력하는" 정책 기반 강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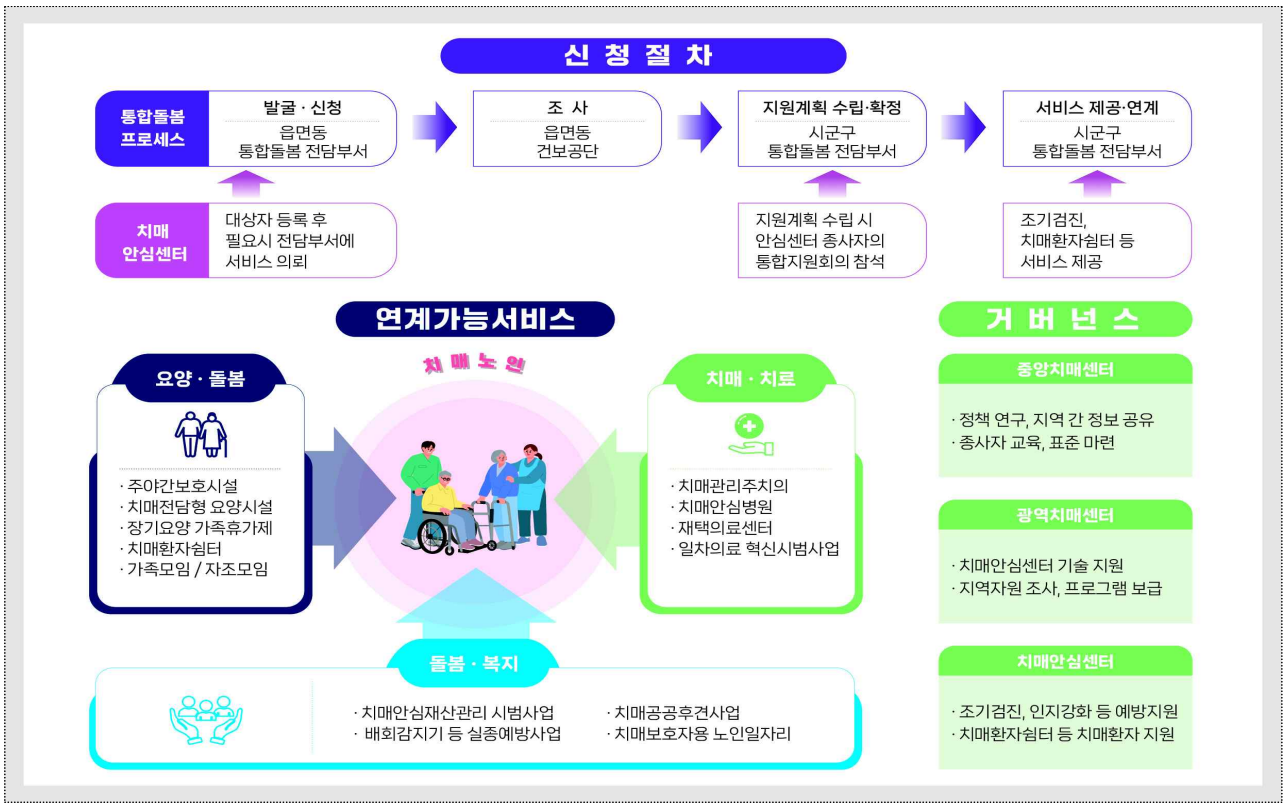
◇ **통합돌봄지원법 시행 예정('26.3)**에 따른 **치매유관자원 연계 강화**

◇ **치매안심센터 유형별 지원, 거주지 제한 없는 연결망 구축** 등 현장에 적합한 **지원체계 마련**

○ **(자원연계)** 돌봄통합지원법 시행('26.3 예정)에 따라 **치매인프라도 통합적으로 제공**할 수 있도록 **체계 완비** 국정과제

- **(연계강화)** 시군구 **통합지원회의**에 치매안심센터 **참여 활성화**, 상호 연계매뉴얼 마련 등 **통합돌봄 전담조직-치매안심센터 협력** 증진('26 지침 개정)

【 통합돌봄지원체계 내 치매 서비스 】



○ **(전달체계)** 의료자원 등 **지역여건을 고려한 현장맞춤 서비스** 필요, 환자와 보호자 간 거주지 상이 등 **환경변화에 대응**하는 **치매관리체계 개편**

- **(유형별지원)** 기존의 **일률적**인 치매안심센터 **지원·평가체계를 개선**할 수 있도록 농어촌 등 **지역 특색**에 맞는 **치매안심센터 유형 구분**에 따른 **차별적 지원 등*** **지역중심형 체계 마련**('26 개발, '27 시범, '28 확산)주요

* 지역상황에 따른 운영 방식 유연화 및 유형에 따른 평가방식 차별화

【 참고 : 치매안심센터 유형별 지원(안) 】

현행	개선	
치매검진, 치매예방서비스, 치매인식개선사업 등 제공	서비스형	(여건) 의료인프라 충분, 치매환자多 등 → (대응) 치매검진↓, 사례관리↑ 등
	예방형	(여건) 경도인지장애자 증가, 치매 부정적 인식 → (대응) 인지강화교실↑, 인식개선
	검진형	(여건) 의료인프라 부족, 지역공동체 → (대응) 찾아가는 검사↑, 자원 연계

- **(체계정비) 중앙치매센터 업무**에 연구·정책과제 발굴 등을 **추가**하는 등 중앙치매센터, 광역치매센터 역할 **정비·강화방안 마련**

- **(광역연계망)** 환자-보호자 간 **거주지가 상이**해도 **치매환자 지원, 보호자 상담이 원활**하도록 **비대면시스템 운영매뉴얼 제작** 등 지역 간 **거주지 제한 없는 광역연결망** 구축('26 지침 개정)

* 비대면 상담, 원활한 정보교류 등 협력 매뉴얼을 바탕으로 센터 간 업무협조 및 신속한 업무 처리를 수행하도록 하여 **치매환자와 비동거 가족의 관계 회복**을 지원

< 치매관리전달체계 5년 후 변화 >

	현행	개선
<중앙> **중앙치매센터** (1개소, `25)	▪ 광역치매센터·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(프로그램, 지침 안내 등) ▪ 치매공통교육과정 개발·운영 ▪ 치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 운영·관리 ▪ 심판청구 등 치매공공후견 지원	▪ 광역치매센터·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 ▪ 치매공통교육과정 개발·운영 ▪ 치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 운영·관리 ▪ 심판청구 등 치매공공후견 지원 **(+) 연구 수행, 프로그램 질 관리, 정책과제 발굴**
<시·도> **광역치매센터** (17개소, `25)	▪ 광역 치매관리시행계획 수립·지원 ▪ 치매관련 종사인력 교육·훈련 ▪ 지역사회 자원 연계 ▪ 치매공공후견인 후보자 양성	▪ 광역 치매관리시행계획 수립·지원 ▪ **프로그램 운영 등 치매안심센터 종사자 실무 교육 및 컨설팅** ▪ 지역사회 자원 연계 ▪ **심판청구 지원 등 후견사업 강화**
<기초> **치매안심센터** (256개소, `25)	▪ 조기진단 및 예방서비스 ▪ 환자쉼터, 조호물품 등 치매환자 지원 ▪ 치매안심마을 등 치매인식개선	▪ **경도인지장애진단자 서비스 강화** ▪ 서비스형, 검진형 등 **유형에 따라 차별적 서비스** 제공
<의료자원> **치매안심병원** (25개소, `25)	▪ 치매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시설 등을 갖춘 전문 병원	▪ 치료인프라 지속 확충 **(+) 의료취약지 추가 지원**
치매관리주치의 (42개 시·군·구, `25)	▪ 치매환자 대상 체계적·지속적 치료·관리 제공	▪ **단계적 확대** * (`25) 42개 → (`28) 전국 확대 ▪ **재택의료센터와의 연계**

붙임 1 제5차 치매관리종합계획(`26~`30) 추진방향

'제5차 치매관리종합계획(2026~2030)' 추진방향

구분	그간의 실적(~'25)	성과분석	추진방향
예방 치료	▸ 치매선별검사도구(CIST) 개발 ▸ 노인복지관 인지활동서비스 제공 ▸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도입	성과 조기진단체계 강화 및 지역사회 치료인프라 기반 마련 한계 비효율적인 조기진단체계와 치료인프라 양적 부족	▸ **자체진단도구(CIST-FV) 마련** ▸ **경도인지장애진단자 맞춤 지원** ▸ **치매관리주치의 단계적 확대 및 질 관리**
돌봄 경감	▸ 독거 등 치매환자 대상 맞춤형 사례관리 제공 ▸ 장기요양가족휴가제 확대(11일) ▸ 신임요양보호사 치매교육 확대	성과 치매역량 제고 등 치매 돌봄 서비스 질적 제고 한계 정서지원, BPSD 등 다양성 부족	▸ **정서지원패키지 등 정서지원 강화 및 치매환자 가족 노인일자리 제공** ▸ **인지지원등급자 주야간보호-치매환자 쉼터 중복 이용 허용** ▸ **BPSD 등 현장 중심 교육 강화**
친화 환경	▸ 치매안심마을 지정·우수기준 마련 ▸ 치매공공후견인 후보자 양성 (1,459명, `24) ▸ 배회 가능 어르신 인식표 보급 (29,479건, `24) 등	성과 치매안심마을, 치매공공후견인 후보자 등 양적 확대 한계 경제적 피해 노출, 운전능력 판단 도구 미비 등 지역사회 치매관리 보완 필요	▸ **치매안심재산관리지원서비스 도입** ▸ **치매공공후견 지원인원 확대** ▸ **치매 등 고위험 운전자 대상 운전능력진단 방안 마련**
연구 지원	▸ 전주기 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(R&D) 추진 ▸ 치매역학·실태조사 결과 발표('25)	성과 특허 등 우수한 연구실적 및 근거기반 정책을 위한 데이터 확보 한계 AI 등 외부환경 변화에 따른 연구지원 마비 및 기술 현장 적용성 부족	▸ **AI 등 치매 혁신기술 연구 지원** ▸ **복지용구 예비급여로 신기술 활용 확산** ▸ **치매프로그램 질 관리체계 구축**
정책 기반	▸ 치매안심센터 분소 설치 (`273개소, `24) ▸ 치매안심센터 운영평가(`23), 치매관리시행계획 평가(`24) 시행 ▸ 방문건강관리사업 등 타 기관 간 정보 연계 강화	성과 지역사회 치매 거점기관으로서 치매안심센터 기능 강화 한계 의료자원, 거주지 상이 등 지역 상황을 고려하지 못한 지원	▸ **돌봄통합법 시행에 따른 연계 매뉴얼 마련** ▸ **지역 여건을 고려한 치매안심센터 유형별 지원** ▸ **환자·보호자 간 거주지가 달라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광역연결망 구축**

제5차 치매관리종합계획 구성

○ **베이비부머 세대의 고령화, 인공지능 기술 발전 등 사회환경 변화**에 따른 **포괄적·맞춤형 정책 추진** 및 자기결정권, 자산관리 등 **치매환자의 권리 보장 강화 필요**

○ **5대 영역, 10개 분류**를 바탕으로 **제5차** 치매관리종합계획의 **체계 구성**

영역	분류	영역	분류
1 예방·치료	① 경도인지장애진단자 조기진단 강화 및 치매위험인자 관리 ② 전문치료체계 구축과 치매복합질환 대응	**4 연구지원**	① AI 등 치매 연구 및 디지털 기술 활용 지원 ② 데이터 기반 치매정책 평가
2 돌봄경감	① 치매 걱정 없는 인프라 확충과 서비스 다양화 ② 보호자의 돌봄소진 예방 및 종사자 BPSD 등 치매역량 강화	**5 정책기반**	①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치매관리 체계 고도화 ② 촘촘한 치매자원 연결망 형성
3 친화환경	① 치매여도 안전한 치매친화적 환경 조성 ② 자기결정권 및 자산관리 등 치매환자 권리 보장		

붙임 2 주요 과제 성과 목표

분야	주요 성과	'25년	→	'30년	비고
예방치료	**일상에서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치매예방 및 치료 지원**				
	경도인지장애자 치매안심센터 등록자 수	20만명	→	25만명	
	치매관리주치의[대표]	42개	→	전국 확대	치매관리주치의 운영 기초지자체
	치매진료지침	일률적 지침	→	원인별·중증도별	
돌봄경감	**치매환자 가족과 보호자가 지치지 않도록 맞춤 지원 강화**				
	장기요양 치매수급자 지원 확대	치매환자쉼터 중복 제한	→	중복허용(`26) 이용한도 확대(`27)	
	치매환자 보호자 노인일자리	-	→	제공(`27)	
	BPSD 전문교육 수료	-	→	2,500명	
	치매안심센터 사례관리 대상자 수	20만명	→	22만명	
친화환경	**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치매환자 권리 보장**				
	치매안심재산관리지원서비스[대표]	-	→	본사업 도입(`28)	
	치매공공후견 지원인원	256명	→	1,900명	
	치매 인식도	74점	→	81점	
연구지원	**미래를 대비하는 연구 지원**				
	표준화된 논문 영향력 지수(mmIF)	-	→	79.2	NTIS 연구성과 관리시스템
	치매프로그램 심사건수	-	→	50개	
정책기반	**모두가 협력하는 정책 기반 강화**				
	치매안심센터 기능 정비	-	→	유형별 지원	
	지역사회 치매관리율[대표]	77%	→	83.3%	`26년 지자체 합동평가지표
	지역별 치매안심센터 치매환자 등록률 격차	65%	→	35%	HP2030 성과지표

붙임 3 중증도별 · 영역별 제5차 종합계획 주요 추진내용

	발병 이전, 고위험군	경증 (재가 거주)	중증 (높은 BPSD 또는 와상환자)
예방치료	• 치매안심센터 자체진단도구 (CIST-In Depth) 적용 * 경도인지장애진단자 검진 변별력 제고		
	• 경도인지장애 서비스 확대 * 치매안심센터 주3회 인지강화교실 확충 등		
	• 치매안심센터와 유관기관 간 협력을 통한 조기검진체계 강화		
		•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전국 확대	
		• 치매맞춤 진료지침* 개발 * 원인도별(알츠하이머 등)·중증도별 상황을 고려한 임상진료지침	
돌봄지원		• 장기요양 치매 지원 확대 * 인지지원등급자 주야간보호시설 이용한 도상향, 치매환자쉼터와 중복 이용 허용	• 치매인프라 확충 * 치매안심병원 및 치매전담형 장기요양시설 확충
			• 종사자의 치매역량 제고 * 작업치료사, 간호사 등 종사자 BPSD교육과정 확대 및 재택의료센터 치매교육 확충 **BPSD 등 치매 대응역량 강화**
			• 주야간보호기관의 치매 지원 확대 * 단기보호시설 이용 확대 기대로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활성화
		• 치매환자 보호자용 노인일자리 제공 * 돌봄 경험이 많은 보호자가 다른 보호자에게 돌봄 정보 및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는 '기억친구 멘토-멘티' 노인일자리 유형	
친화환경		• 운전고위험군 선별도구 도입 * 치매환자 등 고위험군 운전능력을 객관적으로 점검하는 운전능력진단시스템	
			• 치매공공후견사업 활성화 * (25) 256명 → (26) 300명 → (30) 1,900명
	• 치매안심재산관리지원서비스 도입 * **본인 의사**에 따라 **신탁계약을 체결**하고, **국민연금공단**이 이에 근거한 의료비, 필요물품 등 **일상생활에 필요**한 물품·서비스 사용에 **지출**될 수 있도록 지원		

붙임 4 치매 단계별 제5차 종합계획 주요 추진내용

발병 이전 고위험군 (일반국민, 경도인지장애자) *경도인지장애자 수 281만명(`24) 유병률 28.14%	**< 조기검진, 위험인자 관리, 인식 개선 >** **① 조기 검진 강화** ○ 경도인지장애 **변별력 제고**를 위한 치매안심센터용 **자체진단도구 (CIST-In Depth)** 개발(`26~`27) ○ 돌봄서비스, 노인일자리에서도 **치매검사**를 받을 수 있도록 **연계**(`26) ○ 감별검사 시 **검사비 지원 확대** 검토 **② 위험인자 관리 및 인식 개선** ○ 경도인지장애진단자용 **자가관리 매뉴얼 개발**(`27), 예방 강화를 위한 **문화로 치유 등 타 사업**과도 **연계** ○ 기관명(치매안심센터 등), 사업명(치매환자쉼터 등) 등 **치매관련 용어** 단계적 **정비**
경증치매 (재가 환자) * 65세 이상 **경증치매환자** 수 61.7만명(`24) 유병률 67.7%	**< 치매치료 강화, 재가 거주 지원 및 부담 경감 확대 >** **① 재가 인프라 확충** ○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**전국 확대**(`28) ○ 장기요양 주야간보호기관과 치매안심센터의 치매환자쉼터 간 **이용을 허용**(`26)하고 치매 수급자의 주야간보호시설 **이용한도 상향 검토**(`27) **② 돌봄 부담 경감** ○ 주야간보호기관 **단기보호 제도화**를 통한 **장기요양가족휴가제 활성화**(`26) ○ **치매환자 보호자**용 **노인일자리** 연계·제공(`27) ○ 인지ICT 등 치매 특화 **복지용구 예비급여** 확대(`26~) **③ 자기결정권 보장** ○ **치매안심재산관리지원서비스** 도입(시범사업 `26~`27, 본사업 `28~) ○ 치매환자 등 **고위험군**이 **객관적으로 평가**를 받을 수 있도록 **운전 능력자가시스템 도입**(`26~)
중증도·중증치매 (높은 BPSD, 와상 등) * 65세 이상 **중증도치매환자** 수 26.8만명(`24), 유병률 29.5%  * 65세 이상 **중증치매환자** 수 2.5만명(`24) 유병률 2.8%	**< BPSD 인프라 확충, 대응역량 강화, 맞춤 친화환경 조성 >** **① BPSD 인프라 확충** ○ BPSD 전문 치료시설인 **치매안심병원 확대**(`25, 25개소) ○ 거동불편 환자 대상 **방문진료를 제공**하는 **재택의료센터 활성화** ○ 치매전담형 **공립요양시설 확충**(`25, 408개소) **② BPSD 대응역량 강화** ○ 간호사, 작업치료사 등 직종별 치매전문교육 내 **BPSD교육과정 신설**(`26~) ○ **재택의료센터 치매교육 확대**(`26~) **③ 맞춤 친화환경 조성** ○ 인식표 다양화, 일시보호 시범사업 검토 등 **실종 치매환자 보호체계 강화** ○ 치매전담형 공립요양시설 내 치매친화환경 조성(`27~)

※ 치매임상평가척도(CDR)와 전반적 퇴화척도(GDS)에 따라 중증도를 분류하고 **주민등록연양인구**에 **유병률을 적용**하여 산출하였으며 **중증도**의 경우 **2023년 치매역학·실태조사 결과**를 적용

붙임 5 그간 치매정책 주요 성과



그간 치매정책 주요 성과		
검진예방		
조기 검진	제1~4차	• 효율적인 검사를 위한 한국형 치매선별검사도구(CIST) 개발·적용('21~) • 66세 이상 건강검진 시 인지건강검사 실시('22~)
	5차	• 경도인지장애 변별력 제고를 위해 치매안심센터 전용 자체진단도구 개발('26~) • 노인일자리, 통합돌봄 등 노인유관사업 간 검진 연계로 검진 활성화('26~)
예방 강화	제1~4차	• 경도인지장애진단자 등 고위험군 대상 치매안심센터 인지강화교실 운영('19~) • 경로당, 복지관 치매예방프로그램 제공('21~)
	5차	• 경도인지장애용 자가관리매뉴얼 보급, 인지강화교실 확충('27) • 문화로 치유, 건강100세운동교실 등 타 사업과 연계('26)
치료지원		
인프라	제1~4차	• 전문적 치료·관리를 제공하는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'24 도입, '25 42개 시군구) • BPSD전문치료를 제공하는 치매안심병원('18~, '25, 25개소) 지정
	5차	• 치매관리주치의 전국 확대('28) • 의료취약지 중심 치매안심병원 확충('27~)
경제적 지원	제1~4차	• 치매검사비용(CERAD-K, MRI 등) 건강보험 적용('17)하여 부담 경감 * CERAD-K 20만원 → 6.5만원, MRI 60만원 → 14~33만원, • 감별검사 등 치매검사비 본인부담금 지원(감별검사 시 중위소득 120%, 11만원) • 치매치료관리비 지원(중위소득 140% 권고, 월 3만원, 연 36만원)
	5차	• 치매검사비 지원 확대 검토 • AI 등 첨단기술 기반 조기진단 및 맞춤형 치료·예방 등 혁신 기술 연구지원('27~)
돌봄경감		
환자 지원	제1~4차	• 치매안심센터 전국 설치('19), 치매환자쉼터, 조호물품 등 치매환자 지원 • 장기요양5등급('14.7), 인지지원등급('18.1) 등 장기요양 치매등급 신설 * 재가급여 장기요양 가족휴가제, 복지용구 등 장기요양서비스 제공 •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치매전담형 요양시설 확충('16~, 401개소)
	5차	• 치매환자쉼터-주야간보호시설 간 중복이용 허용('26) 및 장기요양 이용한도 확대('27~) • 치매특화 물품 복지용구 예비급여 확대('27~)
부담 완화	제1~4차	• 중증치매환자 진료비 본인부담률 인하(진료비 본인부담금 최대 60% → 10%, '17~) • 연말정산 시 200만원 소득공제(치매환자는 장기 치료를 요하는 자에 해당, '14~) • 치매안심센터 내 가족교실, 자조모임 등 보호자 대상 프로그램 제공('19~)
	5차	• 치매안심센터 내 정서지원패키지 등 보호자 대상 프로그램 다양화('26~) • 치매환자 보호자용 노인일자리 제공('27~)
친화환경		
인식 개선	제1~4차	• 지역사회 치매친화 환경 조성을 위해 치매파트너 양성, 치매안심마을 운영('19~) • 치매 예방을 위한 치매예방수칙 3·3·3 배포(3行, 3勸, 3禁, '14~)
	5차	• 치매파트너 대상자별 맞춤 교육방안 마련('26~) • 인지건강 실천지수 2.0으로 개편('27~)
권리 보장	제1~4차	• 사전 지문등록제, 인식표 등 실종예방물품 보급('19~) • 치매공공후견인 지원('19~)
	5차	• 치매안심재산관리지원서비스 신규 도입('26 시범사업, 추후 본사업) • 치매공공후견 지원인원 확대('30, 1900명) • 치매 등 고위험군이 객관적으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운전능력자가시스템 도입('26)

붙임 6 5차 종합계획 수립 후 달라지는 모습

	현행	추진방향
예방 치료	• 의료기관용 **진단도구* 사용** * CERAD-K, SNSB 등 ** 진단 시 1~2시간 소요 등 경도인지장애 변별력 저하 • 경도인지장애진단자 대상 **서비스 부족** * 치매안심센터 인지강화교실 주 1회 운영 • **치매관리주치의** 시범사업 도입 * ('24) 도입 ('25) 42개 시군구	• 치매안심센터용 **진단도구* 개발**('27) * 자체진단도구(CIST-In Depth, 가칭)를 통한 경도인지장애진단자 변별력 제고 • 경도인지장애진단자 대상 **서비스 확충** * 치매안심센터 인지강화교실 주 3회 확대 ** 경도인지장애진단자 자가관리매뉴얼 개발('27) 및 보급('28) •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**전국 확대**('28)
돌봄 지원	• 장기요양 **인지지원등급자** 주야간보호 **이용한도 부족** * 현행 주야간보호시설 이용 최대 12일 • 치매환자 **보호자 전용** 노인일자리 유형 **부재**	• 장기요양 **인지지원등급자** 주야간보호 **이용한도 확대** * 장기요양위원회 논의를 거쳐 확대 추진 • 치매환자 **보호자** 간 **멘토-멘티노인 일자리** 유형 제공('27)
친화 환경	• 치매환자 대상 재산관리 관련 **별도** 서비스 **부재** • 치매공공후견 지원 * 7년간('19~'25) 지원인원 256명 동결 • 치매 등 **운전 고위험군 선별**을 위한 별도 판단**체계 부족*** * 의료 진단서 등에 의존	• **치매안심재산관리지원서비스** 도입 * 시범사업('26~'27), 본사업('28) • **치매공공후견 지원 확대** * (지원인원) ('26) 300명 → ('30) 1,900명 • 운전고위험군 운전능력진단시스템 **시범 운영**('26) 및 조건부 면허제도 **체계 개편** 검토('27~)경찰청
연구 지원	• 치매뇌은행(4개소) 운영질병청 • 치매 특화 복지용구 부족	• **치매뇌은행** 확대(5개소, '27) • 치매 특화 **복지용구 예비급여** 확대 ('27~) * 배회감지기 다양화, 인지ICT기기 등
정책 기반	• 치매안심센터 대상 **일률적 지원·평가** • **치매안심센터** 중심 **제한적 사례 관리** 제공	• **지역 특색***에 맞는 치매안심센터 **유형 구분** 및 **차등 지원** * 예) 도시는 서비스형, 농어촌은 검진형 • **통합돌봄법 시행**에 따른 의료·요양·돌봄 통합**사례관리 활성화** * 치매안심센터-통합돌봄 전담부서 간 연계 강화 등